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성가족부의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데이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 2명(5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여성가족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1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개방형 직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무감사담당관을 개방형직위에서 제외하는 대신 청소년활동안전과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1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11. 29. ~ 12. 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9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 수립·추진
및 평가 등 총괄

13.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제10조제2항 중 “법무감사담당관”을 “청소년활동안전과장”으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275”를 “277”로 하고, 일반직 계 “271”을 “273”으로 하
며,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전산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
관·통계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37”을 “39”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277”을 “279”로 하고, 일반직 계 “273”을 “275”로 하며,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전산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
통계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39”를 “41”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① ~ ⑧ (생략) ⑨ 정보통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 11. (생략) <u><신설></u> <u><신설></u>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 ----- ----. 1. ~ 11. (현행과 같음) 12. <u>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 수립·추진 및 평가 등 총괄</u> 13. <u>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u> <u>화를 위한 계획 수립·추진</u> <u>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u>
제10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생략)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u>법무감사담당관</u> 및 청소년보호환경과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10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청소년활동안전과장</u> ----- ----- -----.

신 · 구정원대비표

[별표 1]

여성가족부 공무원 정원표(제9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275</u>	<u>277</u>	+2
•	•	•	
•	•	•	
일반직 계	<u>271</u>	<u>273</u>	+2
•	•	•	
•	•	•	
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전산사무관 · 시설사무관 · 공업사무관 · 통계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u>37</u>	<u>39</u>	+2
•	•	•	
•	•	•	

[별표 2]

여성가족부 공무원 정원표(제9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277</u>	<u>279</u>	+2
•	•	•	
•	•	•	
일반직 계	<u>273</u>	<u>275</u>	+2
•	•	•	
•	•	•	
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전산사무관 · 시설사무관 · 공업사무관 · 통계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u>39</u>	<u>41</u>	+2
•	•	•	
•	•	•	